

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업무처리 요령

농림수산부 고시 제 1995-81호('95. 9. 25)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처리 요령에 의거 국산농수산물은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 등이 추가 지정되었고 농수산물가공품에는 햄, 소시지, 베이컨 등이 추가 지정되었다.

이에 따라 시행상의 문제로 인하여 농림수산부 및 관련업체와의 협의('95. 11. 30)를 거쳐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따른 일부 해석상의 혼란이 우려되는 부분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별 계도기간에 대한 세부지침(농림수산부 유관 51160-734)이 시달되었고 당 협회에서는 책자 “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처리 요령”을 인쇄하여 전화원사(113개사)에 배부하였다.

□ 주요골자(농수산물 원산지 업무처리 요령 세부지침 참조)

사슴고기, 토끼고기 등 총 63개품목

② 농수산물 가공품 중 육포류 등 총 30개 품목류

가. 계도기간

1) 농림수산부 고시 1995-81호('95. 9. 25)에 의한 추가지정품목 - 계도기간 : '96. 12. 31까지

① 농수산물 가공품 중 햄, 소시지 베이컨 등 총 24개품목

② 국산 농수산물 중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 등 총 164개 품목

2) 농림수산부 고시 1995-60호('94. 11. 1)에 의한 기지정품목 - 계도기간 : '96. 6. 30까지

① 국산 농수산물 중 산양고기, 오리고기,

3) 수입 농수산물 중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 등 총 189개 품목 - 계도기간 없이 기존대로 시행('91. 7월부터 시행되었음)

□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업무처리요령 세부지침

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처리요령<농림수산부 고시 제 1995-81호(95. 2. 25)> 중 제5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한 원산지 표시 세부지침 및 계도기간은 다음과 같다.

■ 농수산물 원산지 업무처리요령 세부지침

항 목	세 부 지 침
<p>■ “수입산”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</p>	<p>1.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</p> <p>가. 특정원료를 3개국 이상 국가에서 수입하여 동시 사용함으로써 원료의 생산국명을 모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</p> <p>나. 원료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원료의 공급처(생산국)가 빈번하게 바뀌어 생산국명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</p>

항 목	세 부 지 칩
<p>■ 계도기간의 설정</p> <p>■ 혼합특정성분의 표시</p> <p>■ 배합비율 증감범위 20%의 적용기준</p>	<p>(1) 최근 3년 이내에 원산지 또는 함량배합비율이 연 평균 3회 이상 변경되었거나, 최근 1년동안 연 3회 이상 원산지 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</p> <p>(2) 3년 미만의 가공품 생산업체는 평균 4개월 동안에 1회 이상 원산지 표시 사항이 변경된 경우</p> <p>다. 기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도 생산국명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</p> <p>(1) 원료 구입선 및 배합비율이 안정되어 있지 않아 포장재 제작이 어려운 경우 다만, 원산지에 따라 가격차이가 심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</p> <p>(2) 기타 주의를 다하여도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</p> <p>2.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계도기간은 다음과 같다.</p> <p>가.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처리 요령(농림수산부 고시 제 1995-81호 <95.9.25>)으로 신규지정된 국산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 : 1996년 12월 31일까지</p> <p>나. 원산지 표시 농수산물 검사요령(농림수산부 고시 제 1994-60호<1994.11.1>)에서 지정한 원산지 표시 대상 가공품 : 1996년 6월 30일까지</p> <p>3.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처리요령 제5조 제1호 “나”목의 특정성분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 혼합 특정성분 명칭이 제품명으로 사용되는 때는 혼합특정성분 원료중 대표적인 원료 2가지를 표시, 또한 주 원료는 관계규정에 의해 표시</p> <p>(예) 해물탕면의 경우</p> <p>① 원료원산지 밀가루 90% (미국산 50, 캐나다산 40) 해 물 7% (미국산 다시마 2, 중국산 새우 2)</p> <p>4. 배합비율 증감범위 20퍼센트의 적용기준은 특정원료의 수입산 총합량을 기준으로 적용하고, 표시방법은 국별 함유비율을 표시하거나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.</p> <p>예) ① 원료원산지 : 배과즙 50%(미국산 30, 브라질산 20) ※ 배과즙 50%의 20%인±10% 이내 변경(미국 30±10%, 브라질 20±10% 가능)시 기존포장재 사용허용</p> <p>② 원료원산지 : 배과즙 50%(미국, 브라질)</p>

참고 :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처리 요령 중 제5조 및 제20조 규정

제5조(가공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 기준 및 방법) 제3조의 원산지 표시 대상 가공품에 대한 원료의 원산지 표시 방법과 기준은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의

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.
다만, 물 또는 첨가물은 함량순위 및 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표시기준

- 가.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 표시는 사용된 당해 원료농수산물에 배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원료농수산물인 경우에는 당해원료 농수산물 1가지, 배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원료농수산물인 경우에는 2가지 원료농수산물의 원산지 및 배합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당류·식염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.
- 나. 특정성분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정성분의 원료가 “가”목의 규정에 의한 표시대상이 아닌 때에는 그 특정성분의 원료의 원산지 및 배합비율을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.
- 다. 가공업자는 가공품의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“가”목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무 대상 외의 원료에 대하여 그 원산지 및 배합비율을 표시할 수 있다.

2. 표시방법

- 가. 국산원료는 “국산”이라 표시하되, 가공업자의 필요에 따라 생산지의 시·군명을 표시할 수 있다.
- 나. 수입원료는 생산국명을 표시하되, 부득이한 사유로 생산국명의 표시가 어려운 다음의 경우는 “수입산”이라 표시할 수 있다.
이 경우 유통관리 전담기관의 장은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, 그 내용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(1) 특정원료를 3개국 이상 국가에서 수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원료의 생산 국가명을 모두 표시

하기가 곤란한 경우

- (2) 원료의 가격변동 등으로 인하여 원료의 공급처(생산국)가 빈번하게 바뀌어 생산국명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
 - (3) 기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도 생산국명을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
- 다. 동일 원료로 국산원료와 수입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국산원료와 수입원료를 함량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.
 - 라. 원료 농수산물을 2차 이상 가공한 원료를 보관·저장 또는 숙성 등의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할 때는 식품공전상 당해 제품의 기준당도, 성분배합기준에 따라 원료의 배합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.
(예: 오렌지쥬스의 경우 오렌지과즙 100% <국산 30%, 브라질산 70%>)
 - 마.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입 농수산물을 국내에서 1차 가공하여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원료의 원산지는 그 원료의 생산국명을 표시하되, 가공업자의 필요에 따라 그 원료가 국내에서 가공된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.

제20조(세부 실시요령) ① 검사업무 담당기관의 장은 이 요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실시요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- ② 유통관리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로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그 내용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□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

가. 수입 농수산물(HS4 단위 178개 품목)

구분	분류내용
제2류	육(肉)과 식용설육
제3류	어류(魚類), 갑각류, 연체(軟體) 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 동물
제4류	낙농품, 조란, 천연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
제5류	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
제6류	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및 인경(鱗莖), 뿌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절화(切花) 및 장식용의 잎
제7류	식용의 채소, 뿌리 및 괴경(塊莖)
제8류	식용의 과실 및 견과(堅果)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
제9류	커피, 차, 마테(茶의 一種) 및 향신료
제10류	곡물
제11류	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(麥芽), 전분(澱粉), 아눌린 및 밀의 글루텐
제12류	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, 각종의 종자와 과실,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및 절과 사료용 식물
제13류	락(식물성 액즙), 검, 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액즙과 엑스
제15류	동·식물성의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, 조제식 용지와 동·식물성의 납
제16류	육류·어류·갑각류·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 동물의 조제품
제17류	당류와 설탕과자
제18류	코코아와 그 조제품
제19류	곡물, 분, 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
제20류	채소, 과실,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
제21류	각종의 조제 식료품
제22류	음료, 알콜 및 식초
제23류	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유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
제24류	담배와 조제한 담배대용물
제44류	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
제46류	짚, 에스파르트 또는 기타 조물(粗物)재료의 제품, 농세공물 및 지조(枝條)세공물
제48류	지(紙)와 판지, 제지용 펄프, 지 또는 판지의 제품

나. 국산 농수산물(127개 품목)

항 목	기 지 정 품 목	추 가 품 목
곡 류	쌀(멥쌀, 찹쌀, 현미), 보리쌀(보리쌀, 할 맥, 눌린부리쌀), 울무(울무, 울무쌀)	밀, 옥수수
잡 곡 류	—	좁쌀, 수수쌀, 기장쌀, 메밀, 팝콘옥수수
두 류	콩(콩나물콩 포함), 팥, 녹두	검정콩, 파란콩, 기타 콩, 검정팥, 붉은팥 녹색팥, 간녹두
서 류	—	고구마, 감자
채유종실	땅콩, 참깨, 들깨	알땅콩, 붉은땅콩, 검정참깨, 붉은참깨, 붉은들깨
채 소 류	건고추, 마늘, 양파	칸마늘, 쪽마늘, 칸양파, 건조양파, 칸생강, 절단생 강, 도라지, 더덕, 당근, 오이, 가지, 연근, 건조호 박, 무말랭이, 고구마줄기, 토란줄기
약 재 류	작약, 황기, 천궁, 당귀, 도라지, 사삼, 산약, 향부자	갈근, 감초, 강활, 결명자, 구기자, 금은화, 독활, 두충, 만삼, 백문동, 모과, 목단, 반하, 방풍, 복령, 복분자, 백지, 백출, 비자, 산수유, 오배자, 우슬, 원황정, 자소 음양곽, 익모초, 진피, 지모, 지황, 차 전자, 창출, 천마치자, 택사, 패모, 하수오, 황백, 황금, 행인, 현삼, 후박
과 실 류	참다래, 파인애플	사과, 배, 단감, 감귤, 감, 살구, 매실, 멜론, 토마 토, 앵두, 무화과, 유자, 버찌
버 섯 류	영지버섯	팽이버섯, 양송이
인 삼 류	수삼	—
임 산 물	고사리, 취나물, 송이버섯, 표고버섯, 호도, 잣, 밤, 대추, 꽃감	은행
축 산 물	산양고기, 오리고기, 사슴고기, 토끼고 기, 천연꿀, 녹용, 녹각	<u>쇠고기</u> , <u>돼지고기</u> , <u>닭고기</u>
수 산 물	굴비, 아귀, 대구, 고등어, 부세, 가자미, 복어, 뱀장어, 미꾸라지, 냉동갈치, 냉동 오징어, 냉동홍어, 냉동참치, 냉동조기, 냉동돔, 냉동명태, 냉동청어, 냉동정어 리, 냉동고등어, 냉동가오리, 냉동대하, 마른미역, 마른오징어	처리형태를 불문하고 비식용, 젓갈류를 제외한 모든 수산물

다. 농수산물 가공품

항 목	기 지 정 품 목(A)	추 가 품 목(B)	A+B
	30개류	24품목	54품목류
과 자 류	잼류 (1)	식빵 (1)	2
유가공품	우유류, 저지방우유류, 유당분해우 유류 (3)	분유류, 치즈, 버터류 (3)	6
식육제품	—	햄, 소시지, 베이컨류 (3)	3
통·병조림	(농산물) 사과, 배, 복숭아, 포도, 감귤, 살구, 매실, 자두, 참다래, 토마 토, 딸기, 밤 (수산물) 고등어, 전갱이, 삼치, 정어리, 꽁치, 다랑어, 연어, 패류 (2)	—	2
두 부 류	묵류(포장된 것) (1)	두부(포장된 것) (1)	2
식용유지	참기름, 들기름 (2)	대두유, 옥수수, 낙화생유 (3)	5
면 류	—	국수, 당면, 라면 (3)	3
다 류	침출차(녹차, 홍차, 우롱차, 보리차, 결명 자차) 추출차(귤차, 구기자차, 당귀차, 두충차, 오가피차, 오미자차, 영지차, 생강차) 분말차(땅콩차, 울무차) 과실차(유자차) (4)	대추차 (1)	5
청량음료	과실, 채소음료(사과, 배, 복숭아, 포도, 감귤, 살구, 매실, 자두, 참다래, 토마토, 딸기) (1)	채소 (1)	2
인 삼 제	백삼, 홍삼, 태극삼, 농축인삼류 인삼분말, 인삼차류, 당침인삼 (7)	—	7
조미식품	—	간장, 된장, 고추장, 케찹 (4)	4
절임식품	절임식품(마늘, 양파) (1)	오이, 무 (2)	3
단순가공	땅콩가공품, 견과류가공품, 과실 채소류가공품(고춧가루포함), 곡물 가공품(참쌀, 보리, 팥, 녹두) 특용, 기호작물 가공품, 육포류, 조미어포류 (8)	밀, 조미김 (2)	10

□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

구 분	표 시 요 령																		
<p>1. 통관된 상태 그대로 유통되는 농수산물</p> <p>2. 포장되어 유통되는 농수산물(통관된 후 재포장하여 판매되는 농수산물 포함)</p>	<p>가. 대외무역법 시행령,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원산지 관리 세칙에서 정한 원산지 표시방법에 의해 표시하되 다음과 같다.</p> <p>(1) 한글,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.</p> <p>(2) 최종 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형태와 방법으로 표시할 것.</p> <p>(3)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할 것.</p> <p>(4)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.</p> <p>다만, 의도적으로 제거하지 않는 한 정상적인 배포, 보관과정에서 손상되지 않고, 최종구매자에게 도달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.</p> <p>가. 원산지 표시 활자 크기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89 788 1250 1020"> <thead> <tr> <th>포 장 전 면 크 기</th> <th>활 자 크 기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30cm이상 × 20cm 이상 또는 600cm² 이상</td> <td>38point 이상</td> </tr> <tr> <td>15cm이상 × 10cm 이상 또는 150cm² 이상</td> <td>20point 이상</td> </tr> <tr> <td>10cm이상 × 5cm 이상 또는 50cm² 이상</td> <td>12point 이상</td> </tr> <tr> <td>10cm이상 × 5cm 미만 또는 50cm² 미만</td> <td>8point 이상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나. 위치 : 포장전면 좌측 상단에 표시를 원칙으로 한다.</p> <p>다. 색깔 : 포장지 바탕색과 구별할 수 있는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한다.</p> <p>라. 표시방법</p> <p>(1) 포장지 직접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랩포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스티카 부착도 예외적으로 허용</p> <p>(2) 그물망 재포장의 경우에는 꼬리표 부착 및 내찰 허용</p>	포 장 전 면 크 기	활 자 크 기	30cm이상 × 20cm 이상 또는 600cm ² 이상	38point 이상	15cm이상 × 10cm 이상 또는 150cm ² 이상	20point 이상	10cm이상 × 5cm 이상 또는 50cm ² 이상	12point 이상	10cm이상 × 5cm 미만 또는 50cm ² 미만	8point 이상								
포 장 전 면 크 기	활 자 크 기																		
30cm이상 × 20cm 이상 또는 600cm ² 이상	38point 이상																		
15cm이상 × 10cm 이상 또는 150cm ² 이상	20point 이상																		
10cm이상 × 5cm 이상 또는 50cm ² 이상	12point 이상																		
10cm이상 × 5cm 미만 또는 50cm ² 미만	8point 이상																		
<p>3. 날개 또는 산물로 유통되는 농수산물(통관된 후 재포장하지 않고 날개 또는 산물 거래 농수산물 포함)</p>	<p>가. 다음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표시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93 1516 1244 178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표 시 방 법</th> <th>규 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날개판매</td> <td>스티카 부착(현품)</td> <td>가로 3cm × 세로2cm이상 또는 직경 2.5cm이상</td> </tr> <tr> <td>용기판매</td> <td>용기에 표시</td> <td>가로15cm × 세로10cm이상</td> </tr> <tr> <td>"</td> <td>푯말 표시</td> <td>가로15cm × 세로10cm, 높이 10cm이상</td> </tr> <tr> <td>산물거래</td> <td>상품안내 표시판(판매장소)</td> <td>가로30cm × 세로50cm이상</td> </tr> <tr> <td>진열판매</td> <td>안내표시판(진열대)</td> <td>가로 7cm × 세로 5cm이상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표 시 방 법	규 격	날개판매	스티카 부착(현품)	가로 3cm × 세로2cm이상 또는 직경 2.5cm이상	용기판매	용기에 표시	가로15cm × 세로10cm이상	"	푯말 표시	가로15cm × 세로10cm, 높이 10cm이상	산물거래	상품안내 표시판(판매장소)	가로30cm × 세로50cm이상	진열판매	안내표시판(진열대)	가로 7cm × 세로 5cm이상
구 분	표 시 방 법	규 격																	
날개판매	스티카 부착(현품)	가로 3cm × 세로2cm이상 또는 직경 2.5cm이상																	
용기판매	용기에 표시	가로15cm × 세로10cm이상																	
"	푯말 표시	가로15cm × 세로10cm, 높이 10cm이상																	
산물거래	상품안내 표시판(판매장소)	가로30cm × 세로50cm이상																	
진열판매	안내표시판(진열대)	가로 7cm × 세로 5cm이상																	

□ **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시의 처벌규정**

● 벌칙 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가. **법적근거**

-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 22조(벌칙)
-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, 동법 시행령 제44조, 동법 시행 규칙 제 54조(과태료)
-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업무처리 요령 (농림수산부 고시 제 1995-81호 : '95.9.25)

● 과태료 부과 기준액

(단위 : 만원)

연 간 매 출 액	1차위반자	2차이상위반자
200백만원 미만	25	50
200백만원 이상~ 400백만원 미만	50	100
400백만원 이상~ 600백만원 미만	100	200
600백만원 이상~ 800백만원 미만	150	300
800백만원 이상~1000백만원 미만	200	400
1000백만원 이상~1200백만원 미만	250	500
1200백만원 이상~1400백만원 미만	300	600
1400백만원 이상~1600백만원 미만	350	700
1600백만원 이상~1800백만원 미만	400	800
1800백만원 이상~2000백만원 미만	450	900
2000백만원 이상	500	1,000

나. **과태료**

1) **농산물**

- 부과대상 : 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
- 부과기준 : 최소 3만원에서 최고 1천만 원까지

□ **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고발 포상금 지급요령**

(농림수산부 공고 제 95-20 : '95.3.22)

2) **농산가공품**

- 부과대상 : 원산지 표시 대상 가공품에 원료의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한 가공업자
 - 1차 위반자 :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
 - 2차 이상 위반자 : 상기의 1차 위반자가 처분을 받은 다음날 이후에 제조·가공한 제품에 다시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원산지 표시에 불응하는 자

가. **지급대상**

농수산물(수입쇠고기 제외) 원산지 표시 위반자를 주무관청에 고발한 자

나. **주무관청**

서울특별시, 광역시, 도 및 시·군·구와 유통관리 전담기관
(국립농산물 검사소 본소(0343)46-6060, 해당지역 농산물검사소)

다. **고발**

- 고발대상자
 -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자
 - 수입농산물을 국산품으로 위장하여 판매한 자
 - 수입농산물을 국산품과 혼합하여 국산품으로 위장하여 판매한 자

다. **지급기준**

부정유통물량(건당가액)	포상금지급(건당)	비 고
20만원 미만	50,000원	공무원은 민간인의 1/2지급
20만원 이상~ 100만원 미만	100,000원	
100만원 이상~ 300만원 미만	200,000원	
300만원 이상~ 500만원 미만	300,000원	
500만원 이상~1,000만원 미만	400,000원	
1,000만원 이상	500,000원	

※ 수입쇠고기는 수입쇠고기 부정유통 신고(검거) 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별도 지급